

■ 해사법규 [이론서] 정오표 (2021년 1판) 2021. 1월 수강생 제공

법령의 종류	내 용		
해사안전법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해사안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176호, 2020. 11. 24., 타법개정]	해사안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1.5. 시행
	신교재 245	제13조(정선명령·회항명령의 고지)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<u>음성·음향·수기(手旗)·발광(發光)·기류(旗旒) 신호·무선통신</u>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<u>하여야</u> 한다.	제13조(정선명령·회항명령의 고지)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<u>음성·음향·수기(手旗)·발광(發光)·기류신호(깃발신호)·무선통신</u>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<u>해야</u> 한다.
	구교재 234		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▶ 2021.1.7시행	교재 페이지	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[해양수산부령 제449호, 2020. 12. 4., 타법개정]	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[해양수산부령 제457호, 2021. 1. 7., 일부개정] ▶ 2021.1.7시행
	신교재 422	3. 유해액체물질(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3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	3. 유해액체물질(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「 <u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</u> 」 별표 13 제1호가목2)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또는 포장유해물질 잔류물
	구교재 400		
	신교재 447	<신 설>	제35조의2(해양자율방제대)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(이하 “해양자율방제대”라 한다)를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5조에 따른 어촌계(이하 이 조에서 “어촌계”라 한다)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추어야 한다.

		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·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(이하 “해양자율방제대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명할 수 있다. 1.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2.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.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출동경비 2. 교육·훈련경비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.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.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.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에의 참여 4.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·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--	--	--

	<table><tr><td>신교재 465</td><td rowspan="2">제78조(교육·훈련 대상자 등)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·훈련과정: 3일 이내 2. 제1호 외의 교육·훈련과정(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·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,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·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·훈련과정을 포함한다): 2일 이내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·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승선(乘船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td><td>제78조(교육·훈련 대상자 등)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최초로 받는 교육·훈련과정: 3일 이내 2. 제1호 외의 교육·훈련과정: 2일 이내 <삭 제></td></tr><tr><td>구교재 442</td></tr></table>	신교재 465	제78조(교육·훈련 대상자 등)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·훈련과정: 3일 이내 2. 제1호 외의 교육·훈련과정(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·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,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·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·훈련과정을 포함한다): 2일 이내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·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승선(乘船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78조(교육·훈련 대상자 등)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최초로 받는 교육·훈련과정: 3일 이내 2. 제1호 외의 교육·훈련과정: 2일 이내 <삭 제>	구교재 442			
신교재 465	제78조(교육·훈련 대상자 등)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·훈련과정: 3일 이내 2. 제1호 외의 교육·훈련과정(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·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,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·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·훈련과정을 포함한다): 2일 이내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·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승선(乘船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78조(교육·훈련 대상자 등)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최초로 받는 교육·훈련과정: 3일 이내 2. 제1호 외의 교육·훈련과정: 2일 이내 <삭 제>						
구교재 442								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<table><tr><td>교재 페이지</td><td>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207호, 2019. 11. 12., 일부개정]</td><td>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1.5. 시행</td></tr><tr><td>신교재 500</td><td rowspan="2">제18조(예항사실 등의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을 예항(曳航)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·운항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선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td><td>제18조(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·운항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선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. 다만,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.</td></tr><tr><td>구교재 476</td></tr></table>	교재 페이지	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207호, 2019. 11. 12., 일부개정]	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1.5. 시행	신교재 500	제18조(예항사실 등의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을 예항(曳航)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·운항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선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	제18조(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·운항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선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. 다만,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.	구교재 476
교재 페이지	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207호, 2019. 11. 12., 일부개정]	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1.5. 시행						
신교재 500	제18조(예항사실 등의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을 예항(曳航)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·운항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선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	제18조(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·운항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선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. 다만,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.						
구교재 476								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191호, 2020. 11. 24., 일부개정]	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시행 2021.1.5
	신교재 562 구교재 536	제2조(정의) ① 「수상레저안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 6. 호버크래프트 7. ~ 16. (생략)	제2조(정의) ① 「수상레저안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공기부양정(호버크래프트) 7. ~ 16. (현행과 같음)
수상레저안전법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수상레저안전법 [법률 제17332호, 2020. 5. 26., 일부개정]	수상레저안전법 [법률 제1787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 ▶ 2021.1.5
	신교재 (개정완료) 586 구교재 560	제33조(말소등록)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33조(말소등록)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	신교재 (개정완료) 588 구교재 594	제37조(안전검사)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,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1.·2. (생략) 3. 임시검사 :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	제37조(안전검사)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,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임시검사: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, 장치,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.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.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977호, 2020. 8. 26., 타법개정]	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시행 2021.1.5
	신교재 668 구교재 641	제18조의2(운항규칙)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<u>준수하여야</u>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<u>정선(停船)</u>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<u>운항하여야</u> 한다. 3. ~ 6. (생 략) 7. 다른 선박을 <u>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</u> 선박을 완전히 <u>추월하거나</u>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<u>아니</u> 된다.	제18조의2(운항규칙)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<u>준수해야</u>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<u>선박운항정지(정선)</u>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<u>운항해야</u> 한다. 3. ~ 6. (현행과 같음) 7. 다른 선박을 <u>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</u> 선박을 완전히 <u>앞지르기하거나</u>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<u>안</u> 된다.
수산업법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수산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977호, 2020. 8. 26., 타법개정]	수산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1.5. 시행
	신교재 704 구교재 676	제24조(근해어업의 종류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6. 대형트롤어업: 1척의 동력어선으로 <u>망구전개판(網口展開板)</u>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. 근해안강망어업: 1척의 동력어선으로 <u>안강망</u>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	제24조(근해어업의 종류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6. 대형트롤어업: 1척의 동력어선으로 <u>망구전개판(網口展開板: 그 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12. 근해안강망어업: 1척의 동력어선으로 <u>안강망(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 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어촌·어항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977호, 2020. 8. 26., 타법개정]	어촌·어항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 1.5
	신교재 853 구교재 785	제2조(주민편익시설의 범위) 「어촌·어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다목7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”이란 여객선·생활필수품운반선·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<u>대합실</u>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.	제2조(주민편익시설의 범위) 「어촌·어항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다목7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”이란 여객선·생활필수품운반선·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<u>대기실</u>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.
해양경비법 시행령 ▶ 2021.1.5시행	교재 페이지	해양경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0508호, 2020. 3. 3., 일부개정]	해양경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 ▶ 2021.1.5시행
	신교재 957 구교재 887	제5조(경찰장비·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경찰장구: 페인트볼 및 <u>투색총(投索銃)</u>	제5조(경찰장비·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경찰장구: 페인트볼 및 <u>투색총(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)</u>